제938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(중소벤처기업부)	1.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개정(강화) ○ 지역재단 및 신보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기존 0.04%에서 0.05%로 0.01%p 상향 ▶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	1.중요
2	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항만시설 촬영 결과물의 발간, 복제, 배포 허가기준 신설(신설) ○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*시설의 구역 중 해수부령**으로 정하는 구역에서, ① 경비·검색인력, ② 보안시설·장비, ③ 항만시설이나 부두 전체, ④ 보안상 위협요소를 촬영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발간·복제·(재)배포를 할 수 없음 * 국제 항행 선박이 드나들고, 사람 또는 물건의 승선·하선 또는 선적·하역 등이 가능한 **무역항**으로, 부산항, 인천항, 울산항, 여수항 등 **총 33개** **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0조제2항 ▶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(산림청)	1.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요건 (신설) ㅇ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물의 탐사·시추 시설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유예 실시 – ①산림훼손 최소화 방안 제출 ②산림복구계획(생태복원 포함) 제출, ③굴진채굴 방식(갱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밖에 위치), ④전체 광구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탐사·시추한 광물에 대한 광체(鑛體)의 규모·품위(品位) 등에 관한 분석결과서 제출 ▶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	1.비중요
4	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(강화) – 수동개방장치의 작동조작력 기준(178N이하) 신설 – 모터식 작동장치 작동시간(3초 이내) 기준 신설 –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 기준신설(10일일간 노출시 균열이 없으며, 내합시험에 적합하여야 함 ▶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,제9조,제9조의2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(강화) ㅇ 유수제어밸브의 성능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– 최고사용압력 도입 – 자동기동장치의 환경시험 도입 – 자동기동장치의 반복시험 도입 – 배관과의 접속부품 제한 – 배수밸브의 크기 규정 – 점착시험 도입 – 반복시험 도입 – 비금속물질 노화시험 도입 – 유수검지장치의 내압시험 강화 – 유수신호의 지연시간 규정 – 알람스위치 성능시험 강화 – 시트누수시험 도입 – 일제개방밸브의 내압시험 강화 ▶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2,제5조의2,제5조의3,제7조,제8조의2,제8조의3,제8조의4,제9조,제10조,제12조,제12조의2,제15조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등록기준 제정안 (보건복지부)	1.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의 시설기준, 인력 배치 및 자격 기준(신설) ○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규정 – (시설기준)서비스 제공공간의 면적은 33㎡(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.3㎡를 추가로 확보) – (인력 배치)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, 제공인력 1명 이상 – (인력 자격)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1급 유형 인력 기준을 충족한 자*, 제공인력은 정신건강전문요원, 청소년상담사, 전문상담교사, 심리상담전문가 등의 요건 충족 * 단,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, 2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 ▶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등록기준 제2조,제1조	1.비중요
7	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 확대(강화) ○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한약 처방명과 유사하여 사용이 금지되는 명칭 확대 – 한약처방명(십전대보탕, 녹용대보탕, 총명탕)에 대한 유사명칭(8개) 추가 지정 – 공진(신)단, 경옥고에 대한 유사명칭 기준 신설 ▶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	1.비중요